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1996. 2. 8
총 무 위 원 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 출 일 자 : 1996. 2. 2
- 나.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다. 회 부 일 자 : 1996. 2. 5
- 라. 상 정 일 자 : 1996. 2. 8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호)

가. 제안이유

- 조직의 안정성·능률성·탄력성을 도모하여 원활한 시정업무의 추진 및 업무의 균형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구·정원이 재조정 되어 서산시의 본청에 두는 일부행정 기구의 신설 및 폐지, 업무의 이관조정등 사유발생에 따라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전문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종전 행정기구중 감사담당관란 다음에 "정책개발담당관"을 추가하고 분장사무중 기획담당관의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수익사업 및 직업기업 지원. 육성", 건설도시국 도시과의 "공영개발 관련업무"등을 이관조정하는 한편, 사회산업국의 "청소과"를 폐지하고, 그 분장사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 조정하고, 여타 실.과간 분장사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이관 조정 (안제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 원활한 시정업무의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중 한 시 기구로서 정책개발 담당관의 신설과, 사회산업국의 청소과의 폐지등 기구조정과 그에 따라 분장사무를 실정에 맞도록 이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1) 행정기구조정을 위한 실과와 협의가 되었는지?

→ 시정조정위원회 2회 개최와 계장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실과와 협의후 조정된것임.

질문2) 담당관실과 총무국에는 인력이 많이 배치되었는가하면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등의 기술부서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인력조정 계획은?

→ 정원규칙으로 조정시 최대한 수렴하겠음.

질문3) 정책개발 담당관실의 업무가 기대했던 것보다 미약하며, 도의경우 도시자 직속하에 설치가 되었는데 본시의 경우 시장직속이 아닌 부시장 직속하에 설치가 되어 지방자치행정의 실정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또한 99년말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 이는 민선시대의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추기 위함이나 앞으로 운영해보고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계속존치가될것이고 운영이 미약하면 폐지를 시키고자 함.

5. 토 론

- 생략

6. 소수의견

- 행정기구개편이 보다 과감한 통폐합이 되었어야 하나 그렇지못하여 아쉬웠으며,
- 도시과의 업무가 비대함에도 1개계를 폐지하려고한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 추후 개편이 있을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기구로의 개편이 요구됨.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56 호
의결년월일	1996. . . (제 호)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6. 2. 2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
----------	----

제출년월일 : 1996. .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 안 이 유

- 조직의 안정성·능률성·탄력성을 도모하여 원활한 시정업무의 추진 및 업무의 균형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구·정원이 재조정 되어 서산시의 본청에 두는 일부행정 기구의 신설 및 폐지, 업무의 이관조정등 사유발생에 따라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현실에 부합 되도록 전문 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종전 행정기구중 감사담당관란 다음에 “정책개발담당관”을 추가 하고 분장사무중 기획담당관의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수익사업 및 직영기업 지원·육성”, 건설도시국 도시과의 “공영개발 관련업무” 등을 이관 조정하는 한편, 사회산업국의 “청소과”를 폐지하고, 그 분장사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 조정하고, 여타 실·과간 분장사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이관 조정 (안제 3조).

3. 참 고 사 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국·과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정책개발담당관·총무국·사회산업국 및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3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통제
2. 법제 및 소송업무
3.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
4. 시비결산 심사
5. 지방채·기채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
6. 지방재정동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7. 광역행정 협의 및 행정 협의회에 관한 사항
8.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9. 의회 관련업무의 총괄지정
10. 대통령·국무총리·도지사·시장 지시사항 처리
11. 각종 통계 작성 및 관리
12. 국제간의 섭외·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13. 해외 동포와의 유대

제4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계획 수립·실시
2.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편찬
3. 시정홍보
4.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5. 문화재의 보호관리
6. 출판·향교·사찰관리
7. 관광개발 및 홍보
8. 공보 매개체의 보급·육성
9. 사회단체등록, 정기간행물 발간
10. 종교에 관한 사항
11. 전시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12. 전시 문화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13. 유선방송업무에 관한 사항
14. 문화회관·시립도서관 및 해미읍성관리사무소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계획 수립
2. 시 행정 감사
3. 상급기관의 감사 지시사항 처리
4. 민원사무 처리상황 점검
5. 지방세무감찰, 민원사무처리 상황점검
6.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
7. 기타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 기본 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2. 수익사업 및 직영기업 지원·육성

3. 공영개발관련 업무
4. 공기업 경영 종합계획 조정
5.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6. 민·관공동투자 사업개발
7. 기타 자조재원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개발

제7조 (규격) ①총무국에 총무과·사회진흥과·세무과·회계과·시민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②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일반사무
3. 복무단속
4. 보안업무
5. 공무원 교양 및 복지
6. 하부 행정기관의 지원 및 지도·감독
7. 행정구역 개편
8. 직제 및 정원 인사
9. 선거 및 국민투표
10. 문서수발 및 통제
11. 문서보존 및 보관
12. 방위협의회 운영
13. 공인관리, 직장체육 및 취미활동 지원
14. 주민여론 수집·분석
15. 주민등록관리
16. 학령아동 취학업무
17. 행정서사, 인장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18. 전시자체 행동절차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9. 전시주민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20. 포상에 관한 사항

21. 의식 및 행사
22. 통신시설의 유지·관리
23. 반상회 운영, 여론 및 대화행정
24. 행정업무의 전산화 개발 및 시행
25. 전산실 설치 및 운영·관리
26. 내무부장관 지시사항 처리
27. 그 밖에 다른 실·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3. 읍·면·동 개발 행정지도·육성
4. 새마을 사업의 종합추진
5. 전국토 공원화 운동추진
6. 새마을 교육 및 홍보
7. 새마을지도자 관리
8. 시범 및 취약지 개발
9. 자연보호 및 옥외광고물 단속
10. 개발행정 및 지도·육성
11. 국민 레저시설 확충 및 레저활동 지원
12. 경기가맹 단체 지원·관리
13. 체육회 운영·지도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등 지도·단속
15. 체육공원 조성
16.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17. 청소년 대책업무
18. 기타 체육업무
19.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④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제조사 및 심사청구

4. 지방세 세원조사 및 국세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평가업무
6. 세무조사 평가업무
7. 기부금 모집 통제
8. 시급고 지도·감독
9. 그 밖의 세무업무에 관한사항

⑤ 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비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경리
2. 시비 출납보관
3. 물품의 조달 및 출납보관
4.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보관
5. 시유재산에 관한 사항
6. 영선관리
7. 유가증권 재원의 관리
8. 국·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회계업무 및 이재업무에 관한 사항

⑥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구민원의 즉결처리
2.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3. 민원사항의 열람
4.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조정
5. 민원업무의 연구 및 발전
6. 민원행정제도 개선 연구 및 지도
7. 호적업무
8. 행정규제 완화 및 쇄신주관
9. 제증명 발급
10. 외국인 등록
11.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 운영

⑦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 계획수립 및 운영
2.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3. 민방공 계획수립
4.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5. 전시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
6. 비상대책업무(다만, 주민이동, 관서이동, 비상대비, 지방조직업무는 제외)
7. 전시 민방위계획 및 인력동원 계획수립 실시에 관한 사항
8. 전시 정보 통제소 운영·관리
9. 전시 중앙통제소로부터 전달되는 정보 및 지역군부대가 발령하는 화생방경보전달
10.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계획수립 및 예방
12. 시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13.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
14.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파악 및 재난단계·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운영
15. 병무업무
16.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8조(사회산업국) ①사회산업국에 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지역경제과·산업과·축산과·수산과 및 산림과를 둔다.

②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서민생활보호(구호·후생)
3. 기아 부랑인 정신박약아의 보호
4.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업무
5.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 의료보호 업무
6. 보훈관계업무
7. 식품 및 환경위생 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8.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9. 부정업소 및 불량(부정)식품 단속
10. 위생업소 인·허가 및 위생검사
11.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업무
12.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
13. 집단 급식소 관리업무
14. 식품 및 환경에 관한 면허 업무
15. 식품 및 환경 위생업소 교육
16. 기타 위생에 관한 사항
17.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18. 그 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존 종합대책 수립·지도
2. 환경영향평가 협의
3. 환경분쟁 조정
4.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5. 배출시설의 설치 및 인성허가
6. 환경오염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
7. 유독물 관리
8. 청소허정의 종합·조정
9. 오물 처리허가 및 지도·감독
10. 분뇨, 쓰레기 수거
11. 청소계몽
12. 화장실 개량과 화장실 정화시설 검사 및 개수지시
13. 청소시설 및 관리
14.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5. 환경사업소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환경보호 및 청소에 관한 사항

④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2. 보육시설의 지원 및 지도·감독
3.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4. 부녀자의 직업보도
5. 취약여성의 선도·보호
6. 아동복지 증진
7. 부녀아동 상담 및 상담소 운영 지도·감독
8. 아동 부랑아 선도 및 기·미아의 보호
9. 정도당 지원·육성
10. 노인복지 대책
11. 의례업소 지도·감독
12.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13. 공원·공설묘지 개발 및 운영 관리
14.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⑤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3. 수출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4. 연료·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5. 시정 개량 및 관리
6.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
7. 광공업등 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도
8.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9. 공산품 품질관리
10.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감독
11.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승인·신고수리
12. 자원동원 계획수립 실시에 관한 사항
13. 실업대책

14. 상공동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5. 기타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사항

⑥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3. 특용 원예작물의 증산·장려

4. 농업자재 및 종자갱신

5. 농업기상 및 농작물 재배대책

6. 농업경제 및 경영근대화

7. 농산물 가공처리 및 시장개척

8. 농민 소득증대

9. 양곡관리·수매·수급조절 및 가공업무 지도

10. 잠업증산 및 기술보급

11. 농림수산 동원계획 수립(농업분야)

12. 영농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 합리화

13. 농산물 유통 및 카공에 관한 사무

14. 농산물 유통법인 지원 및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보호

15. 정부양곡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의 감독

16. 그 밖에 산업행정에 관한 사항

⑦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2. 가축증식 및 개량

3. 가축위생 및 공수의 지도·감독

4. 초지조성개량 및 사료대책

5. 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가공처리 지도·감독

6. 도축장 및 가축 시장관리

7. 농림수산 동원계획 수립(축산분야)

8. 그밖에 축산업무에 관한 사항

㉔수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실시
2. 어로지도 및 장비개발
3. 수산단체의 지도·감독
4. 수산증식 및 수출제조·가공
5. 수산물 유통 및 수출장려
6. 부정사업 단속 및 어업처분
7. 수산물 유통 및 수출장려
8.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9. 각종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10. 내수면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
11. 도간 업무분쟁 지도·조정
12. 산업시설 확장에 따른 연안오염 수산 피해대책
13. 농림수산 동원계획 수립(수산분야)
14. 그밖에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㉕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행정 종합계획 수립
2. 임야내 치산계획의 수립실시
3. 사업 및 묘목의 수급관리·검사
4. 양묘 조림 및 수증갱신
5. 사방사업
6. 유실수 및 특용수종 장려
7. 임야단체 및 제재시설 감독
8. 화초 및 관상수 재배관리
9. 임업기술 개량보급
10. 산림재해 예방 및 방지
11. 산림 병충해 예방 및 방제
12. 임산물 수급조정 및 증산

13. 산지개간(훼손)허가
14. 산림보호 부정임산물 단속
15. 국·공유 임야관리
16.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
17. 도시공간 녹화계획 수립 및 실시
18. 가로수 식재관리
19. 자연휴양림 조성과 지정신청
20.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21. 임야매매증명 발급관계 업무
22. 임도개설
23. 임산물 소득원 개발·육성
24. 임업진흥 촉진지역의 개발
25. 보안림 관리
26.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오물·쓰레기투기 및 취사행위등)지도·단속
27. 농림수산 동원계획 수립(산림분야)
28. 그 밖에 산림 및 녹지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도시국) ①건설도시국에 건설과·도시과·건축과·수도과·교통행정과 및 지적과를 둔다.

②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도로 및 크량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3. 개발계획의 수립실시
4. 재해방지 대책 및 하천 관리업무
5. 토목공사의 지도·감독
6. 도로 교량공사의 시행감독
7. 도로 유지·관리 및 편입용지 취득업무
8.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업무
9. 건설동원에 관한 사항
10.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유지·관리

11. 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무
12.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사업
13. 각종 농지개발 사업의 집행·감독
14. 양수기 관리
15. 국·공유 재산관리
16.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

③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 구획정리
2.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 시설 및 유지·보수 관리
3.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국토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도시지역내)
4. 시가지 계획과 구획정리
5. 불량지구 개발사업
6. 가로등 유지·관리
7. 택지개발, 공단조성, 관광지 조성등 개발사업
8. 석포지구 개발사업 관련업무
9.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

④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2. 건축물의 허가와 공사 지도·감독
3.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4. 건축사 및 건축업자에 관한 사항
5. 불량주택·농촌주택 개량 및 쉼터구조 개선
6. 국민주택 기금관리
7.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추진
8.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⑤수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의 계획 및 실시
2. 상수원 개발
3. 상·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4. 상·하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
5. 상·하수도 수질보존
6.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7.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회계 예산집행 및 결산
8.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회계 물품의 조달 및 출납·보존
9.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회계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보관
10. 하수도시설 지도
11. 상수도사업소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상·하수도 행정에 관한 사항

⑥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3. 정유장 설치 및 이전·인가
4. 주차장(노상·노외)에 관한 사항
5. 여객 운송사업 임시운행 허가
6.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감독
7. 시내버스 노선조정
8. 수송동원 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9. 교통탕조사
10. 그 밖에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⑦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
2. 지적민원 처리
3.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4.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5.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
6. 부동산 중개업 허가 처리 및 지도·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업무
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업무

9. 지적공부 보존·관리
10. 매매계약서 점인업무
11. 이동지 검사 및 정리
12. 토지거래 허가·신고업무
13.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
14.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15.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16.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17. 표준지 및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업무
18. 토지공개념 제도 관련업무
19. 그 밖에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의 설치) ①담당관 및 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실·국·과중 정책개발담당관, 사회산업국·가정복지과 및 수산과와 건설도시국 건축과의 존속 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